

#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등 안내



정부에서는 5~29인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일몰\*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계도기간('23.1.1.~'22.12.31.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계도기간 중 장시간 노동 우려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자가진단표와 근로자 건강센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규정은 '21.7.1.부터 '22.12.31.까지만 효력이 인정됨

##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

### 진단 사항 및 방법

### 진단결과



#### 근로자 건강진단

▶▶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지?

\*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등(해당자) 실시  
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·130조, 시행규칙 제197조

준수  
 미준수

▶▶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?

\*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, 작업 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야간근로의 제한,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·설비의 설치·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
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

준수  
 미준수

▶▶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?

\* 물량변화,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등

해당  
 미해당

▶▶ 근로자의 휴일이 부족<sup>①</sup>하거나,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<sup>②</sup>를 수행하였는지?

①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(4주 평균 2회) 이하인 경우 등  
② 5시간 이상 시차 변화가 있는 경우 등

해당  
 미해당

▶▶ 근로자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,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\*를 수행하였는지?

\*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이거나, 판매량·사납금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등

해당  
 미해당

➡ 위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, 현재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강진단 (근로자건강센터 방문 등)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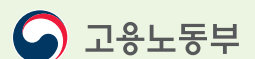


#### 업무부담 가중요인 진단



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(전국 44개소) 운영 안내

<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business/healthcenter.do>



건강센터 운영부 ☎ 052) 703-0467~8, 고객만족센터 ☎ 052) 7030-500번 또는 1644-4544